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되,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등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함.

바.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제26조 및 별표 5)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초 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이도록 함.

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지원(제30조)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 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6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제31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를 고려해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산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 균

국 무 위 원

조명 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3059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 2. 산후조리원
- 3. 노인요양시설
- 4. 어린이집
-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미세먼지(PM-10)
- 2. 초미세먼지(PM-2.5)
- 3. 폼알데하이드

제10조제1호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항제3호, 제4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제3항제6호, 제7호의2, 제9호 및 제10호"로, "제6호 또는 제7호"를 "제9호 또는 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마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법 제16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3항제2호"를 "법 제16조제3항제5호"로 한다.

가. 법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	법 제16조	200	350	500
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	제3항제1호 법 제16조	200	350	500
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측	제3항제2호			
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				
은 경우				

별표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	법 제16조	200	350	500	
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3항제3호				
제출・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기록·보존한 경우					

별표 제2호아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를 "법 제16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3항제4호의2"를 "법 제16조제3항제7호의2"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	법 제16조	200	350	500
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제3항제8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별표 제2호타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3항제5호의2"를 "법 제16조제3항제8호의 2"로 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3항제6호"를 "법 제16조제3항제6호"를 "법 제16조제3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3항제7호"를 "법 제16조제3항제10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법률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며,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07호, 2019. 4. 2. 공포, 2020. 4. 3. 및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적용대상이 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를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로 정하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 균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이 재 갑 장 과

●대통령령 제3059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